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 10. 6 선고 2020가단131747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아모스

담당변호사 고민수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준형

변 론 종 결 2021. 9. 8.

판 결 선 고 2021. 10. 6.

주 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5. 18.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C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 5. 19. 접수 제58782호1) 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D기관의 2021. 4. 7.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 결과, 부천시의 2021. 6. 8.자 과세정보 제출명령 회신 결과, 이 법원의 E에 대한 시가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C 등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2019. 2. 21. ‘C는 원고에게 94,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가합1285),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9나23789)과 상고심(대법원 2020다260919)을 거쳐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C는 2020. 5. 18. 딸인 피고와 사이에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다음날 피고에게 주문 제2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준 사실, C는 이 사건 계약 당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C의 사해의사 또한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C에게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이 부담부 증여이고, C가 원고와의 제1심 소송에서 패소한 날로부터 약 15개월을 경과하여 체결되었으므로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고 주장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계약이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사 김수홍

[별지]

부동산의 표시

1동의 건물의 표시

경기도 부천시 [도로명주소] 경기도 부천시

전유부분의 건물표시

1. 건물의 번호 : 구조 및 면적 : 철근콘크리트조
111.21㎡

전유부분의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1. 경기도 부천시

대 4224.3㎡

대지권의 종류 : 소유권

대지권의 비율: 4224.30분의 12.4424

- 이 상 -

1) 청구취지에는 '제578782호'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수정하였다.